

2026년 양사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감사법무담당관

목 차

I. 감사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	3
□ 총 평	3
□ 처분지시사항 일람표	4
□ 지적사항 처분검토	5
IV. 주요 지적사항	5
V. 우수사례	10
□ 양사면 「양사평화파머스축제」 개최	10
VI. 특수시책	11
□ 양사면 이장 업무 매뉴얼 「슬기로운 이장생활」 시행	11

2026년 양사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2026년도 자체감사 계획 [감사법무담당관-602(2026. 1. 15.)호] 에 따라 실시한 양사면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

I 감 사 개 요

- ☐ 감사기간: 2026. 6. 22. ~ 6. 26. [5일]
- ☐ 감사범위: 2024. 6. ~ 2026. 5. [2년]
- ☐ 감 사 반: 감사담당 외 3인
- ☐ 감사중점사항
 - 군정 주요 시책 등 추진 상황
 - 물품·장비 관리 및 보안 업무 추진 실태
 - 계약 추진 및 예산 집행 적정 여부
 - 부설시공 여부 및 과다 설계 등 시설 공사 추진 실태
 - 각종 보조사업 등 공공재정지급금 운영 실태 점검
 - 장애인 및 복지대상자 관리 등 사회복지 업무 추진 실태
 - 농지관리, 경제교통 관련 업무 추진 실태
 - 주민등록 및 민방위 업무 처리 실태
 - 각종 민원사무 처리 실태 등
 - 바우처 등 지원금 관련 업무 점검
 - 청렴 관련 비공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실태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 기관현황[2026. 6.기준]



□ 정 · 현원 현황

(단위:명)

직 급 별	정 원	현 원	과 부 족	비 고
계	13	12	▽1	
5 급	1	1	-	
6 급	3	4	1	
7 급	3	4	1	
8 급	3	2	▽1	
9 급	3	1	▽2	
기 타	-	-	-	

□ 기관특성

- 양사면은 북한 개풍군, 연백군과 해안선을 기준으로 불과 1.8km 떨어져 있는 강화군 최북단의 접경지이며, 한강·임진강·예성강 세 개의 강물이 모여드는 풍요로운 농경지를 품고 있는 고장임.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양사면에는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역사 안보 관광자원인 '강화평화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옥한 농토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키워내는 강화군의 대표 청정 생태·농업지역임

- 양사면사무소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아래 엄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주민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각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음. 양사면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 지역 자원 관리 등의 주민 중심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총 평

- 이번 종합감사는 양사면에서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추진한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음
- 감사 결과, 회계 관리 및 복무, 농축산업보조사업, 사회복지 분야 등 양사면 소관 업무 전반에 있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일부 업무 과정에서 절차 미준수, 관리 소홀, 정산 부적정 등 총 21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하여, 이 중 시정 10건, 주의 11건, 재정상 조치 4건(**,***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음
-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신속히 보완·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업무 연찬과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감사 지적 사항 총괄

처분 요구(건)			재정상 조치(건/천원)			신분상 조치(건/명)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환수	계	훈계	주의
21	10	11	4/**,***	2/**	2/**,***	-	-	-

※ 현지조치 2건

□ 처분지시사항 일람표

○ 본처분 지적사항(21건), 현지조치(2건)

연번	제 목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원)	
1	업무추진비 집행운영 관리 미흡	주의			
2	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주의			
3	공무원 복무관리 소홀	시정			
4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업무처리 소홀	시정			
5	이륜자동차 신고업무 처리 소홀	주의			
6	보조사업 운영 및 정산관리 부적정	주의			
7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정			
8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업무처리 소홀	시정		(추징) *,***	
9	사례관리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업무 소홀	시정			
10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업무 소홀	시정		(추징) **,***	
1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절차 부적정	주의			
12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부적정	주의			
13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품질 관리 소홀	주의			
14	설계변경 업무 소홀	시정		(환수) **,***,***	
15	준공검사 업무 소홀	시정		(환수) *,***,***	
16	시설공사 제경비 미반영	주의			
17	하자검사 관리 소홀	시정			
18	건설업 자격요건 검토 소홀	주의			
19	단일사업 분할 발주	주의			
20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업무 소홀	주의			
21	비공무원(기간제)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현지	비밀문서 관리 소홀	현지처분			
현지	인감증명 전출자 인감이송 업무 소홀	현지처분			

□ 지적사항 처분검토

[처분요구사항] 시정요구 10건, 주의요구 11건

- 양사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총 21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재정상 추징 2건, 환수 2건을 포함, 업무상 10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고, 11건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주의를 촉구하고자 함

[재정상 조치] 4건(**,***천원)

- 추징 2건(**천원), 환수 2건(**,***천원)

IV 주요 지적사항

1. 공무원 복무관리 소홀

위법 부당 내용	1. 유연근무자 출·퇴근 시간 미준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연근무제 운영 시 유연근무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속공무원의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 연 1회이상 출퇴근, 유연근무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양사면에서는 차세대인사관리시스템에 출·퇴근 등록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됨 2. 특별휴가(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사용·관리 부적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수에 1을 더한
----------------	---

	일수까지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유급·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양사면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3. 당직 근무시간 미준수 ○ 「강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일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직, 휴가 등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양사면에서는 휴일 당직 근무시 정해진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등 관련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처분 요구	○ 시정 ⇒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첨부

2. 보조사업 업무 추진 소홀

위법 부당 내용	1.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호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양사면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조달능력(자부담확보) 검토를 위한 자부담 예치 등의 확인 절차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사실이 있음 2. 보조사업자 정산검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	--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의 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거래승인내역서 및 그 밖에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출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양사면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 시 절차에 따라 정산보고서와 첨부된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 후 보조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보조금 정산 시 구비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처분 요구	○ 주의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3.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운영기관의 장이 사용자 권한 부여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되,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1조에서는 사용자가 권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공유·대여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규정 제12조에서는 사용자가 연가·교육·출장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사용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	--

	주민등록업무를 사용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전산처리하고,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의 입력은 해당 업무 담당 사용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양사면에서는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병가·연가로 인한 부재기간 중 담당자의 사용자 ID로 주민등록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주민등록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처분 요구	○ 주의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4. 설계변경 업무 소홀

위법 부당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등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양사면에서는 설계서의 오류 또는 상호모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처분 요구	○ 시정 ⇒ 계약변경 미이행에 따른 준공금 **,***,***원 환수

5. 준공검사 정산 업무 소홀

위법 부당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및 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계약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함 ○ 아울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양사면에서는 총 5건의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및 대가 지급에 있어 준공서류의 증빙자료,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당 사용 금액에 대하여 정산했어야 하나, *, ***, ***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처분 요구	○ 시정 ⇒ 정산 소홀에 따른 준공금 1,394,060원 환수

양사면 「양사평화파머스 축제」 개최

- ❖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연 및 파머스마켓 등을 운영하여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개요

- 일 시: 2025. 11. 1. (토) 10:00 ~ 16:00
※ 파머스마켓 11. 1.(토) ~ 11. 30.(일) [30일간]
- 대 상: 관내 군민 및 방문객 등
- 장 소: 강화평화전망대 및 남북 1.8 평화센터
- 내 용
 -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파머스마켓’ 운영
 - 지역 예술인 등 문화공연 및 체험프로그램(플리마켓, 초상화, 솜사탕, 영수증 및 보물찾기) 진행 등

☐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및 파머스마켓 등을 개최하여 함께 문화를 즐기고 공유하는 모두가 행복한 문화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관련사진



VI 특 수 시 책

양사면 이장 업무매뉴얼 「슬기로운 이장생활」 시행

- ❖ 행정환경 변화 및 이장업무의 다양화로 인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사면 이장 업무매뉴얼(슬기로운 이장생활)」을 제작하여 배부

□ 추진개요

- 일 시: 연중 상시
- 대 상: 양사면 이장 전체 및 신규 임명 이장
- 내 용: 이장 관련 법령,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재난·안전·농업 실무 안내 등

□ 추진배경

-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증대
- 안전, 재난, 환경, 농업 등 다변화되는 행정 수요에 대한 전문성 요구
- 신규 이장 임명 시 업무 연속성 유지 및 행정 신뢰도 제고 필요

□ 기대효과

-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마을 행정 체계 확립으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선제적인 현안 대응을 통한 주민 행정 신뢰도 제고

□ 관련사진

